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03 발의연월일: 2023. 2. 8.

발 의 자:서정숙·윤두현·김영식

이종배 • 이인선 • 구자근

강대식 · 김예지 · 임병헌

조경태 • 조명희 • 조은희

김상훈·최승재·백종헌

윤주경 • 조정훈 • 조수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마약 확산 실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차단하는 마약 유입 단속 및 처벌 정책과 수요를 억제하는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정책 이 균형 있게 수행되어야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음.

그런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자 함. 또한 급속도로 악화되고있는 국내 마약 확산 실태를 고려하여,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6까지 등).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으로써"를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향상에"를 "향상과 건강한 사회조성에"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40조의2제8항 중 "제51조의2에"를 "제51조의5에"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1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하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6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2(마약퇴치의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의4(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의5(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3.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관련 예 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④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
- 제5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	제1조(목적)	
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		
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u>함으로써</u>	<u>하고,</u> 마약류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중독에 대한 치료, 예방 등을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여 국민보건 <u>향상에</u> 이바지함	함 로써	
을 목적으로 한다.		
	<u>향상과 건강</u>	
	한 사회 조성에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생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	
	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u>야 한다.</u>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	<u><</u> 삭 제>	
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⑦ (생 략)
 - 8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 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 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 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9) (생 략)
-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저	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형 등의
	병과) ① ~ ⑦	(현행과	같음)
	8		
	제51조의5에		
	⑨ (현행과 같음	$\left(\frac{Q_{1}}{1}\right)$	
	<삭 제>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제7장 보칙</u> <신 설>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 인으로 한다.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

<삭 제>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삭 제>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 | <삭 제> 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 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 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삭 제> 의제)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 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51조의2(마약퇴치의 날) ① 마 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 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신 설>

<신 설>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 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중독 ·확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51조의4(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
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
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의5(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3.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마약류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개발 및 보급
 -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 인으로 한다.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

<u><신</u> 설>

<신 설>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보칙